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1. 6. 장철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 1.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9. 8.)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1차 중소기업소위원회(2025. 9. 11.) 상정

제2차 중소기업소위원회(2025. 9. 22.) 상정

제3차 중소기업소위원회(2025. 11. 18.)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11. 21.)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장철민의원)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시행세칙」은 위탁 근거 없이 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제도와 위반행위에 관한 조사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반행위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고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위탁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제도 운영을 체계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9 신설, 제71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제1호의 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성소미)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행위 조사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맹점 등에게 업무보고, 자료 제출 등을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26조의9 신설).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업무를 위탁받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동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에게 수인의무가 부과되고 조사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관련하여,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은 법령 등(법령 및 조례·규칙)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그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행위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이며, 안 제26조의9제2항의 내용은 현장조사에 관한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71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행위 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공단 직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리고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7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행위 조사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동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둘 필요성이 있어 보임.

다만, 입법례를 참고하여 안 제26조의9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대하여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 등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안 제26조의9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행위 조사 및 현행법 제70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71조제2항).

안 제26조의9가 신설되는 경우 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행위 조사 권한의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해 보임.

다만, 이 법 제70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권한의 위탁 근거는 이미 반영되어 시행될 예정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원이 위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권칠승의원, 김위상의원, 김원이의원, 오세희의원, 장철민의원, 이종배의원, 위성곤의원, 이재관의원, 박용갑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상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실시공 등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리고 정부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도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품권의 재사용·재판매 및 미등록 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금

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매출액 또는 온누리 상품권 환전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6.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폐기).